

인천지방법원 2021. 9. 1 선고 2020가단238294 판결 [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엄성진, 손인준

변 론 종 결 2021. 6. 30.

판 결 선 고 2021. 9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① < 인천 강화군 C 답 1,973㎡ >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35, 3, 36~38,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라)부분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51㎡와 같은 도면에 표시된 31~34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다)부분 화장실 8㎡를 모두 철거함과 아울러, ②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, 피고가 -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과 연대하여-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의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2021. 7. 15.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미 분리 확정되었음).

이 유

1. 원고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(이하 편의상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< 인천 강화군 E 대 946㎡와 그 지상 건물 (이하 편의상 그중 건물만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>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강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에 의하면,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에 나오는 (다), (라)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게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,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, ① 이 사건 건물 중 위 (다), (라)부분을 모두 철거함과 아울러, ② 그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.

판사 박관근

감 정 도



